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93
----------	-----

2024. 12. 11.(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종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28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종필 의원)

가. 제안사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장애의 유형도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등록장애인(2,641,896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54.3%(1,425,095명)로 나타나, 지난 2020년 49.9%에 비해 증가하며 고령화 경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sup>1)</sup>을 갖고 있어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건강검진율도 격차<sup>2)</sup>를 보이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1)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4. 4. 30.)

: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 보유율 84.8%, 평균 2.5개의 만성질환 보유  
-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2)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보다 10%p 낮아’ (동아일보, 24. 9. 26.)

: 2023년 장애인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66.5%, 비장애인 수검률 76.4%

< 참고 1 >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구 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등록장애인	2,519,241	2,494,460	2,545,637	2,623,201	2,641,896
65세 이상 장애인구	38.8%	43.3%	46.6%	49.9%	54.3%

자료 : 보건복지부 발표 (2024. 4. 30.)

< 참고 2 > 충청북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명)
지체	43,778
시각	8,702
청각	14,251
언어	713
지적	11,177
뇌병변	8,203
자폐성	1,155
정신	3,682
신장	3,519
심장	141
호흡기	333
간	520
안면	92
장루·요루	624
뇌전증	227
합계	97,117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2023년 말 기준

-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책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

한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 < 참고 3 > 타 시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	규정 및 지칭명	제·개정일
1	경남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1. 8. 5. (제정)
2	경기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3. 7. 18. (일부개정)
3	경북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3. 2. 23. (제정)
4	충남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4. 4. 5. (일부개정)
5	서울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9. 9. 26. (일부개정)
6	부산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 5. 23. (제정)
7	대구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 12. 31. (제정)
8	광주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2024. 8. 7. (일부개정)
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 3. 15. (일부개정)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3. 6. 9. (일부개정)
1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2023. 12. 8. (일부개정)

#### 나. 주요내용 검토

#####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정의 규정은 집행 과정상 명확성과 법 체계성을 위해 상위법상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켰으며, 이를 통한 시책 추진상 혼선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본 조항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건강권 존중 및 보호, 실현과 관련한 책무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장애인 개인별 소득과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건강 위협 상황의 예방 대책 수립·시행,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대한 적극 홍보와 ▲인식개선 정책 실시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본 조항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충청북도민의 의무로 명시함.  
이를 통해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관련 사업들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충북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시행(종합)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명시하였고, 경남을 포함한 5개 시·도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매년	5년마다	시행계획 조항 없음
충북, 경북, 충남,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경기, 광주, 제주, 전북	강원

- 시·도는 법 제6조<sup>3)</sup>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제4조제2항제4의2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함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과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함.

- 이는 법 제7조<sup>4)</sup>와 제8조<sup>5)</sup>, 제9조<sup>6)</sup>, 제13조<sup>7)</sup>와 제14조<sup>8)</sup>, 제15조<sup>9)</sup>, 제16조<sup>10)</sup>와 제17

- 3)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5)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6)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조11)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강검진사업, ▲건강 관리사업, ▲의료접근성 보장 사업, ▲건강교육 사업,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각 사업들의 수행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 지도·감독 관련 사항을 규정 함. (안 제8조~제10조)

- 안 제8조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와 안 10조는 안 제8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센터 지정 및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부정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의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 음.
- 충북의 경우, 지난 2021년 7월 ‘충북대학교병원’ 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로 지정돼, 2022년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 갔고, 올해 예산으로 5억 4,600 만 원(국비 50%, 도비 50%) 가량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 대상 각종 보건의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 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7)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8)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9)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0)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 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1)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보건 의료기관 및 병·의원, 시군보건소, 장애인시설 등 보건의료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렇게 장애인의료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의료인력 부족 상태, 파업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중단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센터 지정 과정에서 운영 책임 소재, 해결방안 등에 대해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 증가 및 장애인의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의료차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그 목적과 추진 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

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걱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법 제 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법

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략)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礙) 관리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3.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 등과의 연계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

#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 장애인(곰두리) 체육관 운영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 조례(안)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원

### 나. 추계 결과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 83,750천원
- 장애인(곰두리) 체육관 운영 : 1,482,545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892,131천원
-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546,756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 국비50%, 도비50%

- 장애인(곰두리) 체육관 운영 : 도비 100%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국비80%, 도비14%, 시·군비6%
-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국비50%, 도비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신영희

